産 業 關 係 硏 究
第27卷 第3號, 2017. 9. pp.85~101
ⓒ 韓 國 雇 傭 勞 使 關 係 學 會

공적연금 개시연령과 실질 퇴직연령의 불일치에 따른 퇴직가구의 빈곤화 연구: 가용자산을 중심으로

이 진 경*

본 연구는 공적연금 개시연령과 실질 퇴직연령의 불일치에 따른 퇴직가구의 빈곤화 가능성을 가용자산을 기반으로 탈빈곤화가능능력 분석, 빈곤연수 및 탈빈곤연수 분석, 민감도분석을 하였다. 첫째, 탈빈곤가능능력 분석 결과, 가구주가 51세에 퇴직하는 가구의 탈빈곤가능능력은 -29,691만원, 52세는 -23,482만원, 53세는 -24,939만원, 54세는 -15,459만원, 55세는 -13,636만원, 56세는 -2,169만원, 57세는 614만원, 58세는 4,736만원, 59세는 2,224만원, 60세는 8,980만원, 61세는 5,793만원으로 으로 51세부터 57세까지의 퇴직가구는 빈곤상태에 있고, 58세부터 61세까지는 빈곤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의 시사점은, 법정퇴직연령 60세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퇴직가구는 빈곤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빈곤연수와 탈빈곤연수 분석 결과, 51세의 빈곤연수는 11년, 52세는 10년, 53세는 10년, 54세는 7년, 55세는 7년으로 이는 퇴직가구의 빈곤화가능연수 중 절반 이상이 빈곤상태인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시사점은 가구주가 51세부터 55세 사이에 퇴직하는 가구는 탈빈곤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감도 분석결과, 51세부터 61세까지의 누적 개선율을 기준으로 퇴직연령 연장요인이 가용자산 증가나 실질생활비 감소 요인보다 2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그 개선효과는 퇴직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여기서의 시사점은 성공적 탈빈곤가능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퇴직연령 연장방안을 필두로 실질생활비 감소방안, 가용자산 증가방안을 마련하되 퇴직연령별 시행방안이 담보되어야 한다.

▶주제어: 빈곤화, 공적연금개시연령, 실질퇴직연령, 가용자산

논문접수일 : 2017년 4월 24일, 심사의뢰일 : 2017년 5월 15일, 심사완료일 : 2017년 6월 20일
* 상지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jinklee@sj.ac.kr

Ⅰ. 서 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은 전 세계의 당면 과제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 진입은 물론 2017년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목전에 두고 있을 뿐 아니라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과제는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대한민국정부, 2015).

고령사회에 대한 정책은 정치, 경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 노동, 빈곤 등 다각도의 과제로 접근되고 있다. 이 중 연금제도와 정년제도의 개편은 핵심방안이 되고 있으며 이미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손영우, 2010; 이정희, 2010; Christine, 2015; Katsuya, 2015). 각국마다 찬반의 입장과 내용이 다르지만 공통되는 사항은 공적연금 수급연령은 상향되고 법정퇴직연령은 연장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유럽국가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노인복지 차원에서 근로보장 기간 연장의 측면보다는 공적연금의 재정적자 해소 측면에서 접근된 것으로 보고, 고령자에 대한 고용효과는 미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손영우, 2010), 퇴직 후 삶은 불안정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이정희, 2010).

우리나라도 공적연금 개혁이 시작되어 2016년부터 연금개시연령이 65세로 상향조정되고 있으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6년부터 법정퇴직연령이 60세가 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유럽의 우려처럼 고령자 고용효과는 미흡한 상태에서 연금수급연령만 높아진다면 국가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고 소비지출이 생애에서 가장 많은 50대와 60대 근로자의 퇴직 후 삶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으며,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이들 세대는 빠른 속도로 빈곤화될 수 있다. 65세 이후 공적연금이 제 기능을 다한다는 전제하에서도 이러한 빈곤화는 실질퇴직연령과 공적연금 개시연령과의 격차가 클수록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우리나라 실질퇴직연령 실태를 보면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16년 발표된 이호창 연구에 의하면, 금융·제조·공공부문의 기업체 인사담당자 설문조사 분석결과 퇴직연령은 사무직 55.7세, 생산직 58.7세로 평균 57.2세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 근로자들은 위 퇴직연령까지 일하지 못하고 조기 퇴직되는 관행이 있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되는 연령은 53～54세로 추정되고 있다(박희준, 2014; 강성호·조준영, 2016). 노동시장의 관행보다 더 빠른 퇴직연령이 있는데 체감퇴직연령으로 50.9세로 조사되고 있다(잡코리아, 2016). 이러한 다양한 퇴직연령을 고려하면 공적연금 개시연령인 65세까지 길게는 15년, 짧게는 8년 동안 버팀의 기간이 존재한다. 이 버팀의 기간 동안 퇴직가구는 빈곤화되지 않을 여력이 있는가? 즉, 퇴직가구의 탈빈곤화 가능 능력이 존재하는가? 이 문제는 국가경제 활동의 중추 역할을 맞고 있는

50대와 60대 가구의 삶의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어 그 실태파악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공적연금 개시연령과 실질 퇴직연령 불일치에서 기인된 퇴직가구의 '탈빈곤화 가능능력'을 추정하여 퇴직가구의 빈곤화 문제를 제기하고, 탈빈곤화 가능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의 민감도를 분석하여 탈빈곤화 가능능력 제고방안의 방향 설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퇴직과 빈곤화에 관련된 연구들은 오랫동안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 정년연장과 연계된 퇴직 이슈를 보면,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취업구조, 고용불안, 취업결정요인 등을 분석한 특성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항 또는 다항로짓 분석을 사용하여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권혜자, 2011; 금재호, 2011; 성지미·안주엽, 2006; 송일호·박명호, 2012; 안주엽, 2014; 엄동욱, 2008). 물론, 빈곤화 이슈도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주제로 여성, 장애인, 빈곤층을 대상으로 여성 가구주의 빈곤화 과정 및 경로 특성, 빈곤층의 빈곤화 요인, 장애인 가구 빈곤화 특성 등 사회 약자의 빈곤화 실태와 경로를 밝히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심층면접에 의한 사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장세훈, 2006; 박재규, 2003; 이성민, 2010).

하지만 조기 퇴직가구의 빈곤화 가능성 실태 및 이들 가구의 탈빈곤화 방안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강성호·조준용(2016)의 연구는 본 연구 주제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연구로서 중고령층 고용안정성이 탈빈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 조사를 활용하여 고용안정성('나의 일자리는 안정적이다'는 문항 활용)을 독립변수로 빈곤 여부(OECD 65세 이상 노인빈곤율과 우리나라 전체 상대빈곤율 사이의 임의값 3개 선정)를 종속변수로 성별, 연령, 소득, 순자산을 통제변수로 하는 로짓분석을 통해 55세부터 64세까지의 고령층이 고용이 안정될 경우 빈곤화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순희·김현정(2002)의 연구는 노인가계의 재정상태를 한국가구패널 조사를 활용하여 소득, 지출 및 자산 충분성 지표를 측정하고 취업 노인가계와 비취업 노인가계의 차이를 비교했는데 비취업 노인가계의 소득충분성과 지출충분성은 취업 노인가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순자산충분성은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같이 고령층의 빈곤화와 그 가구의 경제력(소득, 지출, 자산 등)을 연구 주제로 삼은 것은 맞지만 분석방법과 예상 결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퇴직가구의 빈곤화 가능성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분석도구가 필요한데 1) 퇴직가구의

생계를 위한 지출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2) 그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퇴직가구의 소득원천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3) 소득원천이 고갈되어 빈곤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이다. 본 연구는 이 세 가지 분석도구에서 선행연구와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가계지출은 소비지출 개념으로 비소비지출이 제외된 상태인데 본 연구에서는 소비지출에 비소비지출 중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포함시킨 실질생활비 개념을 적용한다. 이는 안정적 공적연금 수령과 의료서비스 수여를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둘째, 소득의 원천은 간헐적 한시적 소득과 보유자산이 있는데 퇴직가구는 고정적 근로소득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보유자산이 주요 원천이다. 선행연구에서 주로 이용되는 것은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인데 본 연구에서는 순자산에서 거주주택 자산 또는 거주주택 보증금을 제외한 가용자산 개념을 적용하여 퇴직가구의 소득원천을 현실화시킨다. 셋째, 고갈 여부 판단은 가용할 자산이 빈곤선 이하로 떨어진 상태로 판단할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서 적용된 임의 빈곤율에서 추정된 상대빈곤선 대신 2015년 정부가 발표한 최저생계비가 반영된 절대빈곤선과 2015년 통계청이 발표한 상대빈곤선 모두를 기준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들이 변수 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연관성이 있는 변수들의 민감도에 따라 탈빈곤화 가능능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석한다. 즉, 퇴직가구 빈곤화 문제의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퇴직시점 가용자산의 증가, 실질생활비의 감소, 실질퇴직연령의 연장 시나리오에 의한 탈빈곤 가능능력 개선율 제시로 탈빈곤화 가능능력 제고방안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Ⅲ. 연구방법과 분석자료

1. 연구방법

공적연금 개시연령과 실질 퇴직연령의 불일치에 따른 퇴직가구의 빈곤화를 연구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분석을 실시한다. 우선, 분석대상의 퇴직가구는 앞에서 언급된 세 가지 퇴직연령 모두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가구주 만 나이가 51세부터 64세까지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표 1>과 같이 퇴직가구의 빈곤연수, 탈빈곤연수, 탈빈곤화 가능능력을 추정하는데 빈곤화가능연수는 가구주 퇴직연령부터 64세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기간 동안 가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가구지출을 충당해야 되는데 가구의 가용자산으로 가구지출, 즉 실질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한다면 가용자산이 고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가구는 빈곤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탈빈곤 가능능력은 가용자산 잔액으로 측정되는데 예를

<표 1> 지표와 측정방법

변수	측정방법 및 정의
빈곤연수	= 빈곤화가능연수 − 탈빈곤연수
	− 빈곤화가능연수: 가구주 퇴직연령부터 64세까지 − 탈빈곤연수: 가구의 가용자산잔액이 빈곤선 이상인 연수
탈빈곤가능능력 (가용자산잔액)	= 퇴직시점 가구의 가용자산액 − 가구의 실질 생활비
	− 퇴직시점 가구의 가용자산액: 가구주 연령 기준 가구 평균 가용자산액 (=순자산−거주주택가격 또는 거주주택 임대보증금) − 가구의 실질 생활비: 가구 평균 실질생활비(=생활비+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세금)

들어, 가구주가 51세에 퇴직한 가구라면 가구주 51세에 해당되는 가구들의 평균 가용자산을 퇴직시점의 가용자산으로 설정하고 여기서 가구주 51세에 해당되는 가구들의 평균 실질생활비를 빼주면 퇴직시점의 가용자산 잔액이 산출된다. 퇴직 다음해는 퇴직시점의 가용자산 잔액을 기준으로 가구주 52세에 해당되는 가구들의 평균 실질생활비를 빼서 산출한다.

빈곤연수는 빈곤화 가능연수에서 탈빈곤연수를 빼주면 산출되는데 탈빈곤연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빈곤선이 필요하다.

<표 2>와 같이 상대빈곤선은 OECD 기준 중위가구소득의 50% 기준을 반영하고(이진경, 2014), 절대빈곤선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가구원 수 기준 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연 최저생계비를 환산한다.

<표 2> 빈곤선 연액

유형	기준	연액	자료출처
절대빈곤선	최저생계비	3인가구 1,632만원	2015년 정부발표
		4인가구 2,002만원	
절대빈곤선	가구소득 중위값의 50%	3인가구 2,220만원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4인가구 2,854만원	

<표 3> 지표와 측정방법

변수		시나리오
가구자산	퇴직시점의 보유한 가용자산 늘리기	10% 증가
		20% 증가
		30% 증가
가구지출	빈곤화가능 기간 동안의 실질생활비 줄이기	10% 감소
		20% 감소
		30% 감소
퇴직연령	가구주 퇴직연령 연장하기	1세 연장
		2세 연장
		3세 연장

두 번째 분석은 민감도 분석으로 퇴직가구의 탈빈곤가능능력을 제고하는 데 개선율이 높은 방안을 찾고자 실시한다. 탈빈곤가능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것처럼 퇴직연장은 물론 <표 3>과 같이 가구가용자산 증가, 가구지출 감소의 효과를 각각 세 가지 시나리오에 의해 추정한다. 탈빈곤가능능력 개선율은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하고 민감도 요인의 한 단위만 변경했을 때 퇴직가구의 64세 연말 가용자산 잔액의 변화율로 측정한다.

2. 분석자료

본 연구는 가계자산(통계청), 가계신용(금융감독원), 가구패널(한국은행)이 통합된 전국의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된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가구의 자산과 부채의 규모, 소득과 가계지출의 세부항목들을 본 연구의 틀에 맞게 SPSS를 이용하여 추출 및 가공하여 분석한다.

Ⅳ. 분석 결과

1. 가용자산과 실질생활비 분석 결과

<표 4>는 가구주 만 나이를 기준으로 51세부터 64세까지 해당가구의 평균 가용자산과 평균 실질생활비를 보여준다. 전체가구의 가구주 나이는 21세부터 95세까지 분포되어 있지만 평균 가구주 나이는 53.98세이고 빈도가 가장 많은 나이는 55세로 50대는 전체가구 분포의 중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체 가구의 평균가용자산은 13,010만원으로 53세 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51세부터 64세까지의 가구는 가용자산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51세부터 64세 즉 탈빈곤가능능력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의 가용자산은 다른 세대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전체 가구의 평균 실질생활비는 2,856만원으로 51세부터 64세까지의 가구 중 50대 가구의 실질생활비가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가구의 라이프사이클을 보더라도 50대 가구지출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구주가 50대 퇴직을 하게 된다면 가구지출의 부담이 다른 어떤 퇴직연령보다 클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가구주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51세부터 57세까지는 약 4인, 58세부터 64세까지는 약 3인으로 나타난다. 전체 가구 평균 가구원 수 2.8인과 비교하면 58세까지의 가구에서 가구원 수가 전체 평균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 가구 가용자산과 실질생활비

가구주 연령	빈도수	평균 가용자산 (만원)	평균 실질생활비 (만원)	평균 가구원 수
51세	193	14,894	3,883	3.4
52세	235	17,220	3,816	3.4
53세	228	11,947	3,742	3.4
54세	228	17,684	3,859	3.4
55세	237	15,650	3,208	3.1
56세	199	23,908	3,696	3.1
57세	200	22,996	3,678	3.2
58세	219	23,439	3,343	2.9
59세	195	17,585	2,788	2.6
60세	206	21,553	2,963	2.7
61세	137	15,403	2,407	2.4
62세	157	19,610	2,407	2.5
63세	150	21,848	2,509	2.4
64세	132	15,417	2,287	2.3
전체	8974	13,010	2,856	2.8

가구별 특성을 보면, 빈도수가 많은 52세 가구의 평균 가용자산은 17,220만원이고, 평균 실질생활비는 3,816만원이며, 평균 가구원 수는 3.4인으로 나타난다. 반면, 빈도수가 적은 64세 가구의 평균 가용자산은 15,417만원이고, 평균 실질생활비는 2,287만원이며, 평균 가구원수 는 2.3인으로 나타난다. 평균 가용자산 측면에서 보면, 56세 가구가 23,908만원으로 가용자산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53세 가구가 11,947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실질생활비 측면에서 보면, 51세 가구가 3,883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64세 가구가 2,287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가구원 수 측면에서 보면, 51세부터 54세까지의 가구는 3.4인으로 많은 그룹에 속하고, 64세 가구가 2.3인으로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평균 가구원 수는 탈빈곤연수와 빈곤연수 산출 시 <표 2>의 빈곤선 연액 적용기준이 된다.

2. 탈빈곤가능능력 분석 결과

<표 5>는 퇴직가구의 탈빈곤가능능력을 추정한 것으로 가구주가 51세(1월1일 시점)에 퇴직할 경우, 공적연금 수령 개시연령인 65세 이전까지 즉 가구주가 64세가 될 때까지 가구의 가용자산으로 실질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빈곤상태에 놓이게 된다. 퇴직 첫해인 51세의 연말 가용자산잔액은 11,011만원으로 <표 4>의 51세 가

구의 평균 가용자산 14,894만원에서 평균 실질생활비 3,883만원을 빼준 것이다. 퇴직 이듬해인 52세의 연말 가용자산 잔액은 7,195만원, 53세의 연말 가용자산 잔액은 3,453만원으로 4인 가구 절대빈곤선 연액 2,002만원과 상대빈곤선 연액 2,854만원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가용자산 잔액이 남게 된다. 가구주가 51세 퇴직한 가구의 빈곤화가능연수는 14년이고 이 빈곤화가능연수 중 퇴직가구의 가용자산으로 실질생활비가 충당되는 기간은 절대빈곤선과 상대빈곤선 기준 모두 3년으로 추정되므로 빈곤화가능연수 14년 중 11년은 빈곤상태에 놓이게 된다. 가구주가 51세에 퇴직을 하는 가구의 탈빈곤가능능력은 퇴직가구주 64세 연말가용자산 잔액을 의미하는데 -29,691만원으로 추정된다. 퇴직 후 4년차부터 빈곤상태에 떨어져 64세가 되면 누적 적자만 약 3억 원으로 이 액수는 퇴직 시 보유한 가용자산액의 1.99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조달되지 않을 경우 퇴직가구는 파산에 이를 수 있으며 그 생활이 매우 열악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약 4인의 가구원 수 모두에게 당면한 빈곤화 문제로 인식할 수 있다.

<표 5> 퇴직가구 탈빈곤가능능력: 연말 가용자산 잔액

(단위: 만원)

가구주 퇴직연령		51세	52세	53세	54세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평균가용자산, 평균실질생활비, 평균가구원수 적용 기준 연령	51세	11,011													
	52세	7,195	13,404												
	53세	3,453	9,662	8,205											
	54세	−406	5,803	4,346	13,826										
	55세	−3,614	2,595	1,138	10,618	12,442									
	56세	−7,310	−1,101	−2,557	6,922	8,746	20,212								
	57세	−10,988	−4,779	−6,236	3,244	5,068	16,534	19,317							
	58세	−14,331	−8,122	−9,579	−99	1,725	13,191	15,974	20,096						
	59세	−17,119	−10,910	−12,366	−2,887	−1,063	10,403	13,187	17,308	14,797					
	60세	−20,081	−13,872	−15,329	−5,849	−4,025	7,441	10,224	14,346	11,834	18,590				
	61세	−22,489	−16,279	−17,736	−8,257	−6,433	5,033	7,817	11,938	9,427	16,183	12,996			
	62세	−24,896	−18,686	−20,143	−10,664	−8,840	2,626	5,410	9,531	7,020	13,776	10,589	17,203		
	63세	−27,405	−21,196	−22,652	−13,173	−11,349	117	2,901	7,022	4,511	11,267	8,079	14,694	19,339	
	64세	−29,691	−23,482	−24,939	−15,459	−13,636	−2,169	614	4,736	2,224	8,980	5,793	12,408	17,052	13,130
빈곤화가능 연수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9년	8년	7년	6년	5년	4년	3년	2년	1년
탈빈곤 연수	절대빈곤선 기준	3년	4년	2년	4년	3년	7년	7년	7년	6년	5년	4년	3년	2년	1년
	상대빈곤선 기준	3년	3년	2년	4년	3년	6년	7년	7년	6년	5년	4년	3년	2년	1년
빈곤 연수	절대빈곤선 기준	11년	9년	10년	7년	7년	2년	1년	0년	0년	0년	0년	0년	0년	0년
	상대빈곤선 기준	11년	10년	10년	7년	7년	3년	1년	0년	0년	0년	0년	0년	0년	0년
탈빈곤가능능력		−29,691	−23,482	−24,939	−15,459	−13,636	−2,169	614	4,736	2,224	8,980	5,793	12,408	17,052	13,130

가구주가 52세에 퇴직할 경우, 퇴직 첫해인 52세 연말가용자산 잔액은 13,404만원, 퇴직 이듬해인 53세 연말가용자산 잔액은 9,662만원, 54세는 5,803만원, 55세는 2,595만원으로 추정된다. 55세의 연말가용자산 잔액은 상대빈곤선 연액 기준으로 빈곤선 아래에 위치하는 수준이고, 절대빈곤선 연액 기준으로 빈곤선 위에 있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52세 퇴직가구의 빈곤화가능연수는 13년인데 이중 절대빈곤선 기준 탈빈곤연수는 4년으로 빈곤연수는 9년이 되고, 상대빈곤선 기준 탈빈곤연수는 3년으로 빈곤연수는 10년이 된다. 가구주가 52세에 퇴직한 가구의 탈빈곤가능능력은 -23,482만원으로 추정되고 이 수치는 퇴직 당시 가용자산 대비 1.36배에 해당되는 액수로 51세 퇴직가구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자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주가 53세에 퇴직할 경우, <표 4>의 평균 가용자산이 가장 낮은 가구로서 탈빈곤연수도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퇴직 첫해인 53세의 연말가용자산 잔액은 8,205만원으로, 54세는 4,346만원, 55세는 1,138만원으로 추정되는데 55세 연말가용자산 잔액은 절대빈곤선과 상대빈곤선 모두 아래에 위치해 있어 퇴직가구의 가용자산으로는 2년밖에 버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빈곤화가능연수 12년 중 탈빈곤연수는 2년, 빈곤연수는 10년이 된다. 이들 퇴직가구의 탈빈곤가능능력은 －24,939만원으로 퇴직 당시 보유한 가용자산 대비 2.09배에 해당되는 액수로 가용자산 대비 누적적자 수준이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진다.

가구주가 54세에 퇴직할 경우, 퇴직 첫해인 54세의 연말가용자산 잔액은 13,826만원, 55세는 10,618만원, 56세는 6,922만원, 57세는 3,244만원으로 추정된다. 이 퇴직가구의 빈곤화가능연수는 11년으로 이 중 탈빈곤연수가 4년, 빈곤연수가 7년으로 나타난다. 54세 퇴직가구의 탈빈곤가능능력은 -15,459만원으로 누적적자의 수준은 퇴직 당시 보유한 가용자산의 87% 정도임을 알 수 있다.

가구주가 55세에 퇴직할 경우, 퇴직 첫해인 55세의 연말가용자산 잔액은 12,442만원, 56세는 8,746만원, 57세는 5,068만원, 58세는 1,725만원으로 추정되어 절대빈곤선과 상대빈곤선 연액 기준 57세까지만 실질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55세 퇴직가구의 빈곤화가능연수는 10년인데 이 중 탈빈곤연수가 3년으로 빈곤연수는 7년이 된다. 이 퇴직가구의 탈빈곤가능능력은 －13,636만원으로 퇴직 당시 보유한 가용자산의 87% 수준이 된다.

가구주가 56세에 퇴직할 경우, 퇴직 첫해인 56세의 연말가용자산 잔액은 20,212만원, 57세는 16,534만원, 62세는 2,626만원으로 추정된다. 이 퇴직가구의 빈곤화가능연수는 9년으로 이 중 절대빈곤선 기준 탈빈곤연수가 7년이므로 빈곤연수는 2년이 된다. 반면, 상대빈곤선 기준 탈빈곤연수는 6년이므로 빈곤연수는 3년이 된다. 퇴직가구의 탈빈곤가능능력은 -2,169만원으로 추정된다.

가구주가 57세에 퇴직할 경우, 분석대상 중 퇴직가구의 탈빈곤가능능력이 처음으로 양의 수 614만원으로 추정된다. 이 퇴직가구의 빈곤화가능연수는 8년이지만 이 중 1년만 빈곤연수이고 나머지 7년은 탈빈곤기간으로 나타난다.

가구주가 58세 이후 퇴직할 경우, 빈곤가능연수에 상관없이 퇴직가구가 보유한 가용자산으로 실질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빈곤연수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8세에 퇴직하는 가구의 탈빈곤가능능력은 4,736만원, 59세에 퇴직하는 가구의 탈빈곤가능능력은 2,224만원, 60세 퇴직가구의 탈빈곤가능능력은 8,980만원, 61세 퇴직가구는 5,793만원, 62세 퇴직가구는 12,408만원, 63세 퇴직가구는 17,052만원, 64세 퇴직가구는 13,130만원으로 추정된다.

위와 같이 가구주 퇴직연령이 51세부터 57세까지는 정도는 다르지만 퇴직가구의 빈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58세부터 61세까지는 빈곤 기간은 나타나지 않지만 탈빈곤가능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보이고 있어 퇴직가구의 빈곤화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51세부터 55세까지는 퇴직가구의 빈곤화가능연수 중 절반 이상이 빈곤기간으로 나타나 퇴직가구 중 탈빈곤화가 가장 어려운 그룹으로 보인다. 이 중 51세, 52세, 53세의 빈곤연수는 10년 이상으로 퇴직가구의 빈곤화가 가장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현재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된 퇴직연령 평균 57.2세, 조기퇴직연령 53～54세, 체감퇴직연령 50.9세를 고려한다면, 조기퇴직과 체감퇴직된 퇴직가구는 빈곤연수가 10년 이상으로 공적연금 수령개시 전에 심각한 빈곤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것과, 평균 퇴직연령 57.2세에 퇴직하더라도 빈곤기간은 존재할 수 있어 현재 직장인 대상 퇴직연령을 기준으로 한다면 퇴직가구 대부분이 빈곤상태를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3. 민감도 분석 결과

<표 6>은 세 가지 민감도 요인, 즉 퇴직 당시 가구가 보유한 가용자산, 가구주 연령 기준 조사된 평균 실질생활비, 퇴직연령의 조정에 따른 퇴직가구의 탈빈곤가능능력의 개선율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가용자산의 10%, 실질생활비의 10%, 퇴직연령의 1세가 나타내는 값은 다르지만 각각의 값을 기준으로 변화율을 산정한 결과이므로 민감도 요인의 단위수준별 변화에 대한 반응정도를 의미한다. 우선, 요인별 개선율은 퇴직연령 연장 > 실질생활비 감소 > 가용자산 증가의 순으로 탈빈곤가능능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51세부터 61세까지의 누적 개선율을 보면, 퇴직연령 연장요인은 가용자산 증가나 실질생활비 감소 요인보다 탈빈곤가능능력 개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개선효과는 약 2배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가용자산 증가와 실질생활비 감소도 상당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두 요인의 개선효과는 연령별 민

감도 단위별 다르기는 하지만 누적 개선율로 볼 때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다. 특히, 퇴직연령 연장요인은 53세 이후 모든 연령에서 50% 전후의 개선율을 보여 대부분의 연령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용자산 증가는 56세 이후 연령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개선율을 보이고, 실질생활비 감소는 52세, 54세부터 59세까지, 61세에 걸쳐 50% 이상의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퇴직가구연령별 개선율을 보면, 가구주가 51세에 퇴직한 가구의 경우, 탈빈곤가능능력의 개선율은 퇴직연령 연장 > 실질생활비 감소 > 가용자산 증가의 순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9개 시나리오 중 퇴직연령 3세 연장의 경우 즉, 퇴직시점이 51세가 아닌 54세로 연장되었을 경우 탈빈곤가능능력 개선율은 48%로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다음이 실질생활비 30% 감소의 경우로 개선율은 45%, 3위는 실질생활비 20% 감소의 경우로 개선율은 30%로 나타낸다. 가구주가 52세와 53세 퇴직한 가구도 51세 퇴직가구와 비슷 양상을 보인다.

가구주가 54세와 55세에 퇴직하는 가구의 경우, 가용자산을 증가하거나 실질생활비를 감소할 경우의 탈빈곤가능능력 개선율은 동일한 수치를 보이지만 퇴직연령을 연장했을 때는 55세 퇴직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개 시나리오 중 54세 퇴직가구는 퇴직연령 3세 연장 > 퇴직연령 2세 연장 > 실질생활비 30% 감소 순으로 개선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55세 퇴직가구는 퇴직연령 3세 연장 > 퇴직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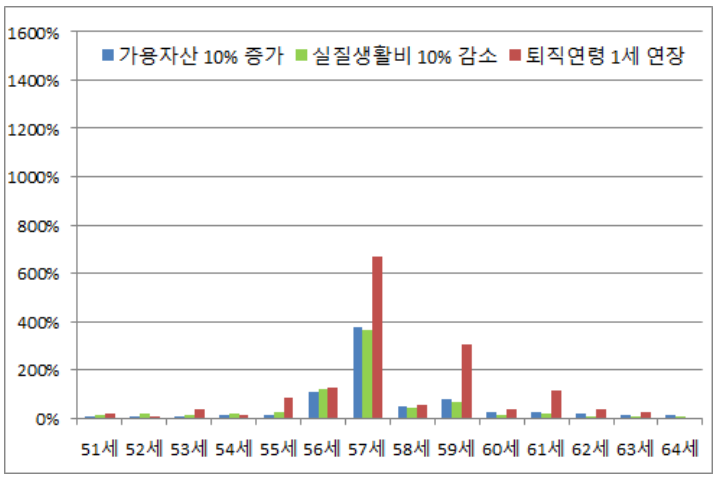
<표 6> 퇴직가구 탈빈곤가능능력 개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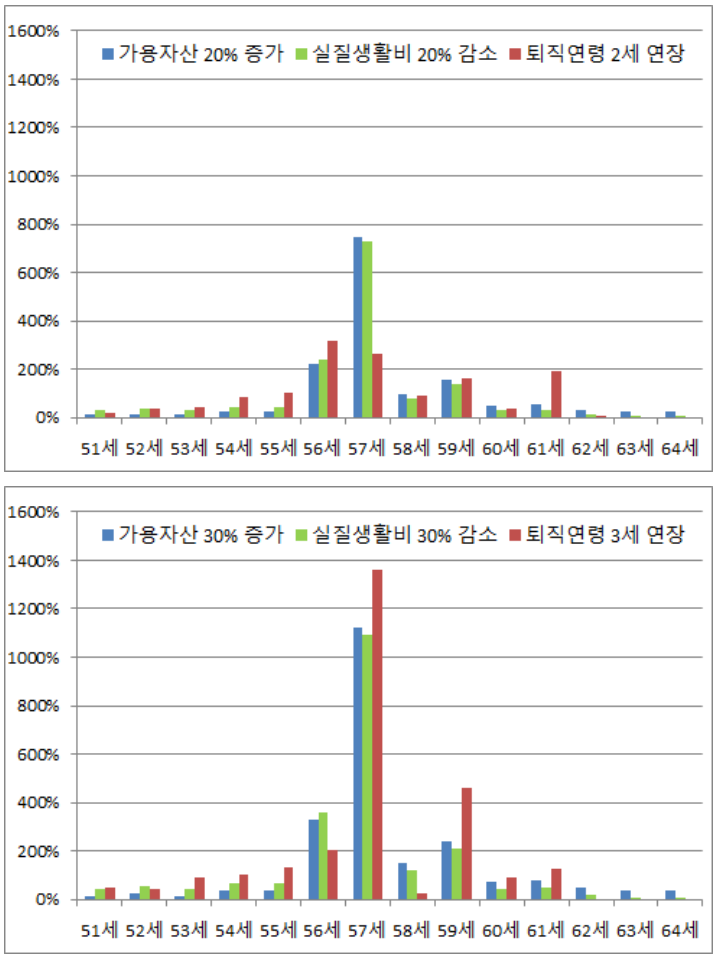
가구주 퇴직연령		51세	52세	53세	54세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누계
퇴직시 가용 자산	10% 증가	5%	7%	5%	11%	11%	110%	374%	49%	79%	24%	27%	16%	13%	12%	704%
	20% 증가	10%	15%	10%	23%	23%	220%	749%	99%	158%	48%	53%	32%	26%	23%	1408%
	30% 증가	15%	22%	14%	34%	34%	331%	1123%	148%	237%	72%	80%	47%	38%	35%	2111%
실질 생활비	10% 감소	15%	17%	15%	21%	21%	120%	364%	39%	69%	14%	17%	6%	3%	2%	714%
	20% 감소	30%	35%	30%	43%	43%	240%	729%	79%	138%	28%	33%	12%	6%	3%	1428%
	30% 감소	45%	52%	44%	64%	64%	361%	1093%	118%	207%	42%	50%	17%	8%	5%	2141%
퇴직 연령	1세 연장	21%	6%	38%	12%	84%	128%	671%	53%	304%	35%	114%	37%	23%	–	1467%
	2세 연장	16%	34%	45%	86%	105%	318%	262%	90%	160%	38%	194%	6%	–	–	1349%
	3세 연장	48%	42%	91%	104%	135%	203%	1362%	22%	458%	90%	127%	–	–	–	2681%

령 2세 연장 > 퇴직연령 1세 연장의 순으로 개선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퇴직연령이 56세 이상인 퇴직가구들의 탈빈곤가능능력 개선율은 55세 이하 퇴직가구와 달리 가용자산 증가의 시나리오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9가지 시나리오 중 56세 퇴직가구의 개선율은 실질생활비 30% 감소 > 가용자산 30% 증가 > 퇴직연령 2세 연장 순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57세의 경우 다른 어느 연령보다 시나리오 9개 모두에서 개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퇴직연령 3세 연장 > 가용자산 30% 증가 > 실질생활비 30% 감소 순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58세 퇴직가구의 개선율은 가용자산 30% 증가 > 실질생활비 30% 감소 > 가용자산 20% 증가 순으로 높게 나타나 다른 연령과 달리 가용자산 증가 노력에서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59세 퇴직가구는 퇴직연령 3세 연장 > 퇴직연령 1세 연장 > 가용자산 30% 증가 순으로 개선율이 높게 나타난다. 여기서 퇴직연령 1세 연장이 2세 연장보다 개선율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것은 1세 연장한다는 의미는 가구주 연령 60세의 평균 가용자산과 평균 실질생활비가 적용되고 2세 연장한다는 것은 가구주 연령 61세의 평균 가용자산과 평균 실질생활비가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와 같이 조사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평균가용자산과 평균 실질생활비가 연령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60세 퇴직가구의 경우, 탈빈곤가능능력 개선율은 퇴직연령 3세 연장 > 가용자산 30% 증가 > 가용자산 20% 증가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61세 퇴직가구는 55세와 마찬가지로 9개 시나리오 중 퇴직연령 연장에 따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시나리오 수준별 탈빈곤가능능력 개선율





위 〔그림 1〕은 시나리오 수준별 탈빈곤가능능력 개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 가지 민감도 요인들이 1단위와 2단위 변화했을 때보다는 3단위 변화했을 때 탈빈곤가능능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3개 그림 모두에서 퇴직연령 57세를 중심으로 정규분포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57세 퇴직가구에서 가장 큰 탈빈곤가능능력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51세 쪽 좌측 방향과 64세쪽 우측 방향으로 갈수록 그 개선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모양이며, 곡선의 변곡점에 해당하는 나이가 좌측의 55세와 우측의 59세 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구주 연령 56세부터 59세까지의 퇴직가구는 가용자산, 실질생활비, 퇴직연장 모두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말해 준다. 즉, 퇴직가구의 탈빈곤가능능력 제고를 위해 가용자산 증가든, 실질생활비 감소든, 퇴직연령 연장이든 어떤 노력이 가해질 거면 50대 중후반을 대상으로 할 때 그 효과가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Ⅴ. 결 론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연금개시연령 65세로 상향, 법정퇴직연령 60세로 연장을 단행하고 있는데, 유럽의 경우처럼 고령자 고용효과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수급연령만 높아져 퇴직가구의 삶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안고 있다. 게다가 현재 직장인의 퇴직연령은 평균 57.2세, 조기퇴직연령 53～54세, 체감퇴직연령 50.9로 조사되고 있어 유럽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로서 공적연금 개시연령과 실질 퇴직연령의 불일치에 따른 퇴직가구의 빈곤화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법정퇴직연령 60세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퇴직가구는 빈곤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탈빈곤가능능력 분석 결과, 가구주가 51세에 퇴직하는 가구의 탈빈곤가능능력은 -29,691만원, 52세는 -23,482만원, 53세는 -24,939만원, 54세는 -15,459만원, 55세는 -13,636만원, 56세는 -2,169만원, 57세는 614만원, 58세는 4,736만원, 59세는 2,224만원, 60세는 8,980만원, 61세는 5,793만원으로 51세부터 57세까지의 퇴직가구는 65세 연금개시연령이 되기 전에 심각한 빈곤상태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58세부터 61세까지는 빈곤 기간은 나타나지 않지만 탈빈곤가능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보이고 있어 퇴직가구의 빈곤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퇴직연령 60세 실현을 위한 고령자 고용효과 제고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공적연금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치로 그치는 것이 아닌 실효성 있는 고용대책이 수반되어야 연금개혁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구주가 51세부터 55세 사이에 퇴직하는 가구는 탈빈곤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빈곤연수와 탈빈곤연수 분석 결과, 상대빈곤선과 절대빈곤선 중 빈곤연수가 긴 연수를 기준으로 볼 때 51세의 빈곤연수는 11년, 52세는 10년, 53세는 10년, 54세는 7년, 55세는 7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의 빈곤화가능연수 중 절반 이상이 빈곤상태인 것을 의미한다. 또한, 누적 가용자산 적자액도 1억이 넘어 가구주가 20～30년 고용상태에서 보유한 가구의 가용자산액보다 퇴직 후 공적연금 개시 전 버텨야 하는 10여 년 동안의 누적 가용자산 적자액이 많게는 퇴직 당시 가구의 가용자산액보다 2배 이상이라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51세부터 55세 사이 퇴직하는 가구는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탈빈곤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고용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50대 초중반 가구의 대책이 다각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공적 탈빈곤가능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퇴직연령 연장방안을 필두로 실질 생활비 감소방안, 가용자산 증가방안을 마련하되 퇴직연령별 시행방안이 담보되어야 한다.

퇴직연령 연장이 가용자산 증가나 실질생활비 감소보다 더 효과적 대안이다. 민감도 분석 결과, 51세부터 61세까지의 누적 개선율을 기준으로 퇴직연령 연장요인이 가용자산 증가나 실질생활비 감소 요인보다 2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가용자산 증가와 실질생활비 감소는 비슷한 수준에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퇴직연령 연장요인은 53세 이후 모든 연령에서 대부분 개선율이 50% 이상을 보여 대부분 연령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용자산 증가는 56세 이후 연령에서 상당수 개선율이 50% 이상을 보이고, 실질생활비 감소는 52세, 54세부터 59세까지, 61세에 걸쳐 50% 이상의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가구의 탈빈곤가능능력 제고방안을 퇴직연령 연장 대책, 실진생활비 감소대책, 가용자산 증가대책을 수립하되 일률적 시행이 아닌 퇴직연령 등 퇴직가구의 특성에 맞는 시행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퇴직 시 가용자산과 실질생활비를 분석 시점의 가구주 퇴직연령가구들의 통계적 평균수준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개별가구 특성이 면밀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향후 가구특성 기반 연구를 통해 가구별 자산운용 측면도 고려된 대안 제시를 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강성호·조준용(2016), “중고령층 고용변화 추이와 고용안정성이 탈빈곤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2호, pp.231-242.
2. 권혜자(2011), 『중고령자의 취업구조와 고용서비스 정책과제』, 한국고용정보원.
3. 금재호(2011), “중장년층의 고용불안과 정년연장”, 『노동리뷰』, 제80권, pp.61-75.
4.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5. 박재규(2003), “여성가구주의 빈곤화와 사회경제적 특성”, 『보건과 사회과학』, 제13집, pp.81-112.
6. 박희준(2014), “정년 60세 시대 인력운영방안에 대한 제언”, 『월간경영계』, 제414권, pp.10-13.
7. 성지미·안주엽(2006), “중고령자 취업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제5권 제3호, pp.39-74.
8. 손영우(2010), “프랑스의 퇴직연금제도 개혁과 퇴직연령 연장”. 『국제노동브리프』, 제8권 제9호, pp.13-21.
9. 송일호·박명호(2012),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 비교분석”, 『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2호, pp.7-26.
10. 안주엽(2014), “합리적 정년연장과 정책과제”, 『산업관계연구』, 제24권 제1호, pp.87-108.

11. 엄동욱(2008),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제8권 제3호, pp.17-38.
12. 이성민(2010), “장애인 가구의 빈곤화 메카니즘”, 『장애의 재해석』, 제1호, pp.34-69.
13. 이정희(2010), “영국 법정 퇴직연령제도 개편”. 『국제노동브리프』, 제8권 제7호, pp.59-66.
14. 이진경(2014), “주택연금의 노인가구 빈곤 완화 효과 분석”, 『부동산연구』, 제24권 제4호, pp.91-101.
15. 이호창(2016), “고령화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대응: 기업체 설문조사 분석”, 『월간노동리뷰』, 제137호, pp.41-53.
16. 잡코리아(2016),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몇 세까지 회사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자료』, 한국경제신문.
17. 장세훈(2006), “빈곤층의 내부 구성과 빈곤화 과정”, 『경제와 사회』, 제71호, pp.179-207.
18. 정순희·김현정(2002), “소득, 지출 및 자산 충분성 분석을 통한 취업 노인가계와 비취업 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0권 제2호, pp.113-122.
19. Christine Lagoutte(2015), *The Long Term Sustainability of European Pension Systems: An illustration from French and British countries*, International Seminar of Public pension. Oct. 29 2015. National Pension Service, Seoul, Korea.
20. Katsuya Yamamoto(2015), *Sustainability of Japanese Public Pension System*, International Seminar of Public pension. Oct. 29 2015. National Pension Service, Seoul, Korea.

abstract

Examining the Impoverishment of No Income Households come from a Gab between the Public Pension Age and the Real Retirement Age

Jin Kyung Lee

This study examines the impoverishment of no income households come from a gab between the public pension ages and the real retirement age using their available asset. The paper analyses the ability to exit poverty, poverty years, poverty exit years, sensitivity analysis. firstly, the result of the ability to exit poverty shows that the retirement households can fall in to poverty without working until the legal retirement age of 60. Because the ability to exit poverty of real retirement age of 51 is -29,691 ten thousand won, 52 is -23,482; 53 is -24,939; 54 is -15,459; 55 is -13,636; 56 is -2,169; 57 is 614; 58 is 4,736; 59 is 2,224; 60 is 8,980; 61 is 5,793. The households retired from 51 age to 57 age fall in to poverty, and those from 58 age to 61 age have impoverishment. Secondly, the result of poverty years and poverty exit years shows that it is impossible for the households retired from 51 age to 55 age to exit poverty. Because the poverty year of 51 age is 11 years, 52 is 10, 53 is 10, 54 is 7, 55 is 7. They experience poverty during over half of gab a between the public pension age and the real retirement age. finally, extension of real retirement age is more effective than increasing available asset or decreasing real expenditure for the improvement on the ability to exit poverty.

Keywords : impoverishment, public pension age, real retirement age, available asset